

발전기금 관리 규정

(제정 2004. 2. 12.)

(전부개정 2015. 8. 26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발전기금이란 본교의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·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기부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 또는 교육 및 연구용 물품 등 자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자산을 일컫는다.

제3조(발전기금 종류) 발전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발전기금: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교에 위임하여 기부한 발전기금
2. 지정발전기금: 대학(원), 학과, 장학금, 건축비, 연구비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
3. 현물발전기금: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기부한 발전기금

제4조(발전기금 기부 제한)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금 기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본교의 건학이념과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발전기금
2. 본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발전기금
3. 기부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발전기금
4.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발전기금

제2장 발전기금위원회

제5조(설치) 발전기금의 효과적인 모금 및 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 및 연구한다.

1. 대학발전에 관한 제언
2.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
4. 대학발전기금 모금활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선교봉사처장, 기획처장, 체육부장, 학생취업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개정 2018.6.6.]

제8조(임기)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개정 2018.6.6.]

제10조 (실무위원회) ①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특수목적기금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장 발전기금 관리

제12조(발전기금 접수 및 관리) ① 발전기금의 접수는 대외협력홍보실에서 담당한다.

② 현금을 제외한 기증물품은 대외협력홍보실과 관련 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한다. 다만,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③ 발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대학정책기금으로 편입한다.

제13조(발전기금 용도 지정) ① 본교의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금의 용도와 교내 사용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정발전기금은 기부금액의 90% 범위에서 사용하며, 나머지 10%는 일반발전기금으로 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.

1. 장학기금
2. 건축기금
3. 현물발전기금
4. 그 밖에 발전기금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발전기금

제14조(발전기금 사용) ① 교내 각 부서는 지정발전기금을 장학금, 시설비, 교육비, 연구지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대학(원) 및 학과는 지정발전기금을 학장(원장)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지정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기금의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발전기금 사용 제한) 발전기금 위원회가 지정발전기금의 용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6조(주관부서) ① 발전기금 관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대외협력홍보실에서 주관한다.

② 대외협력홍보실을 제외한 부서에서 발전기금 모금활동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계 처리) 모든 발전기금은 교비 회계에 포함시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8조(영수증 발급) 주관부서는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총장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9조(기부자 예우)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の内容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, 이에

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발전기금 유치자 예우) 상당금액의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예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21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사항은 발전기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 제정한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04년 2월 12일 제정한 발전기금위원회규정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.